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5. 12.] [국토교통부훈령 제1387호, 2021. 5.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1-3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 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사고 방지와 근로여건 개선대책 마련 등을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全社会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안
4. 업무수요가 지속되어 정규 조직으로 분담하여 수행 하는 사안이 아닌 한시적 사안

②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은 제2차관 밑에 두며, 생활물류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하되 물류정책관이 반장을 겸임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 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은 생활물류 서비스 개선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코로나19 관련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과로사 방지 등 보호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서비스 정책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서비스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서비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서비스 국회 등 대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서비스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반장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대응과를 둔다.
- ③ 상황총괄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반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 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 및 「2021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022년 5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87호,2021.5.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